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4일, 장철민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9.9.)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소위심사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철민의원)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하고,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제조 및 유통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등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검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 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교구등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이하 “교구등”이라 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교구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교구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현행	개정안
	<u>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교구등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 <u>④ 그 밖에 교구등의 보고와 검사,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사업자 보고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제품”은 “교구등”으로 본다.</u>

안전성조사¹⁾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을 수거해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현행법²⁾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가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를 취한 경우,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
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최근 서울 소재 일부 초등학교의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등
에서 납,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
되면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³⁾.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
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
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
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
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일부 교구는 현행법 체계상 별도의 검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예를 들어, 학생용 책상, 의자, 학용품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교실 벽지, 목재, 바닥재 등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칠판, 게시판 등 교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 예시]

품목	예시
학용품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리코더·실로폰 등
완구	모형전화기, 낱말카드, 클레이점토, 곤충채집도구세트 등
아동용 섬유제품	직업 체험복(소방관 등), 어린이 실험복 등
기타 어린이제품	어린이 도서, 농구공·축구공 등, 막대자, 가위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은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하여 어린이제품과 같이 안전성조사 및 수거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등학교 교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이제품”⁴⁾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칠판, 게시판 등 제품의 형

3) 경향신문, “교실 칠판에 고농도 납? 서울 15개 초교 비품 92% 유해 물질 주의보”, 2023.12.5.

태가 아닌 교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⁵⁾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조치를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필요시 직접 점검을 실시하거나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에서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1.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학교시설 중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垓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환경보건법」은 환경부장관이 초등학교 교실을 포함한 어린이활동공간⁶⁾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⁷⁾은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마감재, 목재, 바닥재, 시설물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관련 규정]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6)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7) 참고자료 참조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 ⑩ (생략)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제품이 아닌 형태로 교실에 설치되는 칠판·게시판 등은 KC인증, 안전성조사, 불법제품조사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가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어린이제품과 칠판 등 교구 비교]

구분	완제품 형태의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	교실에 설치되는 칠판·게시판 등 (교구)
KC인증	일정한 재료와 공정을 통해 물리·화학적 구성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KC인증	설치되는 장소마다 재료·형태 및 크기 등이 상이하여 KC인증 불가
안전성 조사	사용하지 않은 새(new)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검사기관이 확인하고, 부적합제품은 제품수거명령 등 조치	교실에 설치되는 칠판·게시판에 대한 시험검사를 위해 시료채취(절단 등)는 사실상 불가
불법제품 조사	KC인증에 따라 해당 제품에 KC마크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미인증 제품인지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 벌칙 등 조치	KC인증이 불가하여 불법제품조사 불가

주: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는 ① 유통 전 KC인증, ② 유통 후 안전성조사 및 행정처분, ③ 불법제품조사 및 벌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시설의 유해중금속 등을 관리하고 있고 학교시설의 책임자(학교의 장 등)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학교보건법」에서 칠판 등을 안전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학습교구는 어린이제품에 포함되는 등 교구 등 물품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교구 등 물품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1.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 2)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 3)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료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 phthalate),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뷰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합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 나.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 나.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 다. 삭제 <2021. 7. 6.>
 - 라. 삭제 <2021. 7. 6.>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mg/kg 이하일 것
 - 다.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의 총합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mu\text{g}/\text{m}^3$ 이하일 것
 -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mu\text{g}/\text{m}^3$ 이하일 것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